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업인의 날 지정〉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8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기념일 현황	7
2. 개별 법률에 따른 법정 기념일 현황	11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84호) 비용추계서 요약 ...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업은 각종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1950~1970년대에는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광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탄 등 광물을 생산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해 온 광업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복 이후 「광업법」¹⁾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²⁾에서는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되,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

1) 광업법은 1906년 대한 제국 시대에 최초로 제정·공포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새로운 광업법(법률 제234호)이 제정·공포되었음.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과 광업인의 헌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광업 시책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기념일 중 광업을 조명하고 그 종사자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기념일은 없으므로 광업인의 날은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점, ② 농업, 임업, 수산업의 경우에는 각각 농업인의 날³⁾, 임업인의 날⁴⁾, 수산인의 날⁵⁾을 정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③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Miners' day)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광산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고 광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광부의 날 관련 해외 사례]

국가	명칭 (지정일)	지정 사유	법정기념일 여부
 미국	National Miners' day (12.6.)	1907년 12월 6일 Monongah 석탄광 (West Virginia) 사망 사고에서 유래 - 광부의 노고를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 제정	O (Action HCon.Res. 208-111th Congress, 2009-2010)
 캐나다	- Miners' Memorial Day (William Davis Miners' Memorial Day) (6.11) - National Mining week (5월 둘째주 월요일)	- 노바스코샤 주에서 파업 시위 과정 중 사망한 William Davis 광부를 추모 - 캐나다 경제에 대한 광물과 금속의 중요성 제고	O (William Davis Miner's Memorial Day Act/ National Mining week proclamation)
 호주	National Mining and Related Industries day (11.22.)	- 광업에 기여한 광부들의 노고를 격려 - 호주 경제에 대한 광업의 중요성 제고	X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음, 관련 법조문 X)
 러시아	The Miner's day (8월 마지막 일요일)	러시아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된 광업인들 치하	O (국가공휴일, Decree No. 3018-X)
 독일	Barbórka (12.4)	- 성 바바라*(St. Barbara)를 기리는 날. * (성 바바라) 광부 직업군의 수호성인	X (법정 공휴일 미 해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탄전문화연구소, 영월 탄광문화연구회, 정선 산업문화연구소, 보령 탄광문화연구소 등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 “광업인⁶⁾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광업인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4

6)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광업인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임.

※ 참고자료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기념일 현황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우주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4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행정 안전부·국가 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 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5	부마민주항쟁 기 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50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 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52	학생독립운동 기 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켜 학생 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 사를 한다.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식시키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우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 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 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산업 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위 원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7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2. 개별 법률에 따른 법정 기념일 현황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 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국가균형발전의 날	1.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	한국수어의 날	2.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재방재의 날	2. 1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6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7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	흙의 날	3. 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9	의용소방대의 날	3. 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암 예방의 날	3. 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1	결핵 예방의 날	3. 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2	수산인의 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3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4	도시농업의 날	4. 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5	도서관의 날	4. 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6	국민 안전의 날	4. 16.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18	자전거의 날	4. 22.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9	새마을의 날	4. 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20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1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2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3	씨름의 날	음력 5. 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2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5	어버리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26	유권자의 날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27	바다식목일	5. 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28	한부모 가족의 날	5. 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29	입양의 날	5. 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30	식품안전의 날	5.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31	가정의 날	5. 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2	발명의 날	5. 19.	특허청	발명진흥법
33	세계인의 날	5. 20.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4	문화다양성의 날	5.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35	희귀질환 극복의 날	5. 23.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36	방재의 날	5. 25.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7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38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39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0	해외파병용사의 날	5. 29.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1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	구강보건의 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43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4	헌혈자의 날	6. 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45	노인학대 예방의 날	6. 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46	해양조사의 날	6. 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47	전자정부의 날	6. 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48	마약퇴치의 날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50	협동조합의 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51	여성기업 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2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53	인구의 날	7. 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54	연안안전의 날	7. 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55	유엔(UN)군 참전의 날	7. 27.	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전양 등에 관한 법률
56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 14.	여성가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8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59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60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61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62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63	지식재산의 날	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64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65	곤충의 날	9. 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6	자살 예방의 날	9. 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67	해양경찰의 날	9. 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68	산업단지의 날	9. 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9	성매매 추방주간	9.19~25.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70	청년의 날	9월 셋째 주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71	치매극복의 날	9. 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72	조달의 날	9. 30.	조달청	조달사업법
73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74	임산부의 날	10. 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75	정신건강의 날	10. 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6	여성어업인의 날	10. 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77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78	여성농업인의 날	10. 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79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80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81	회계의 날	10. 31.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2	동반성장 주간	11월 첫째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3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84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85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86	소방의 날	11. 9.	행정안전부	소방기본법
87	보행자의 날	11. 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88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1. 11.	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89	약의 날	11.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90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 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91	김치의 날	11. 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92	민원의 날	11. 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3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94	가정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5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96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97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료: 행정안전부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84호) 비용추계서 요약⁷⁾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6조의3 (광업인의 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억 4,500만원(연평균 8,900만원)으로 추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광업인의 날 지정 (안 제86조의3)	89	89	89	89	89	445	89

7) 보다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서 원문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W5U0V1T0U3S1T4B0Z2A3Y8Z4X5Y8